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

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5. 3. 13.(목) 10:00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정일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25년 3월 4일

○ 회부일자: 2025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○ 「과학교육진흥법」 일부개정(2010.3.17.)으로 지방과학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근거 조항이 삭제되었고, 「과학교육진흥법」을 전부개정한(2017.10.24.) 「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법」은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융합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음

○ 이에 지방과학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본 조례 존치 근거 및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「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」 폐지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제안이유 검토

○ 1967년 제정된 「과학교육진흥법」이 전부개정(2001.3.28.)됨에 따라 과학교육진흥의 세부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지방과학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

○ 그러나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중앙과학교육심의회를 폐지함에 따라 「과학교육진흥법」 일부개정(2010.3.17.)을 통해 중앙과학교육심의회와 교육감 소속 지방과학교육심의회 관련 규정이 삭제됨

○ 또한, 「과학교육진흥법」이 「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법」으로 전부개정(2017.10.24.)됨에 따라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의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융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

○ 이에 지방과학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과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음

나. 주요내용 검토

○ 「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」 제1조(목적)는 충청북도과학교육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거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근거가 삭제되어 조례의 목적이 실효성이 없음

○ 또한,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는 상위법 근거 폐지에 따라 2010년 이후 미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실효성 또한 없다고 판단됨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조례폐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과학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존치 근거 및 실효성이 없으

므로 실효성 없는 위원회 폐지 및 조례 정비 측면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